규제영향분석서

Ⅰ.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

<table>
<tr><td rowspan="2">1. 규제사무명</td><td rowspan="2">도시재생 거점시설 사용허가</td><td colspan="8">2. 구 분</td></tr>
<tr><td>신설</td><td>○</td><td>강화</td><td></td><td>내용
심사</td><td></td><td>존속
기한</td><td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</td><td>경제적
규제</td><td></td><td>사회적
규제</td><td></td><td colspan="2">기타</td><td></td></tr>
<tr><td>3.소관부처명
작성자 인적사항</td><td colspan="9">도시정책실 도시개발과
과 장 : 지방시설사무관 이명우
팀 장 : 지방시설주사 유원환
담당자 : 지방시설서기 김규동</td></tr>
<tr><td>4. 근거법령</td><td colspan="9">○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6조(공유재산의 보호), 제20조(사용허가)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161조(공공시설)
○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30조(국유재산·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)</td></tr>
<tr><td>5. 자치법규명</td><td colspan="9">「화성시 도시재생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·운영 조례」</td></tr>
<tr><td>6. 피규제집단
및 이해관계자</td><td colspan="9">도시재생 거점시설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</td></tr>
<tr><td>7. 종전규제 및
신설(강화)규제
의 내용</td><td colspan="9">❑종전 규제
- 해당없음

❑신설 규제
제11조(사용허가 등)
① 거점시설의 공간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거점시설의 설립 목적, 시설의 수용 능력 및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③ 시장은 거점시설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시설확보와 그 밖에 원활한 시설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.
④ 거점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「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</td></tr>
<tr><td>8. 규제존속기한</td><td colspan="9">상위법 등 관련법령 등이 신규 제정되거나, 기존 법령이 변경 또는 폐지될 때까지</td></tr>
</table>

Ⅱ.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

1. 규제의 필요성

1-1. 문제정의 (배경과 원인)

○ 도입배경 및 현황

-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화성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 건립사업이 2026년 말부터 순차적 완료 예정 (황계,송산 2026년 / 병점 2030년)

-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적 사후관리와 거점시설의 체계적인 운영·관리 기준 마련을 위해 본 조례 제정을 추진함

1-2. 규제의 신설·강화 필요성

○ 공공질서 및 안전확보

- 공공시설의 특성상 다수 시민의 안전한 이용 가능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므로, 시설 질서유지와 시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사용허가 절차가 필요함

○ 법적 근거 마련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0조(사용허가) 등 상위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근거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, 화성시 도시재생 거점시설이라는 개별 공공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행정처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행정 신뢰도 제고

2.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·편익 분석

2-1. 규제대안의 검토(기존 규제의 대체)

○ 해당없음

2-2. 비용·편익 분석과 비교

○ 규제 비용

- 본 규제 신설로 사용 희망자가 사전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행정적·절차적 수고가 일부 발생하나, 이로 인한 직접적인 신규 경제적 비용 발생이나 과도한 재무적 부담은 없음

○ 규제 편익

- 시설의 수용 능력과 안전 등에 대해 사전 검토함으로써 원활한 질서유지를 도모할 수 있으며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시설물 훼손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다수 시민에게 제공되는 공익적 편익이 규제 비용을 압도적으로 상회함

2-3. 중소기업 규제영향 분석

○ 해당없음

3.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

3-1. 규제의 적정성

○ 본 규제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6조(공유재산의 보호) 및 제20조(사용허가), 「지방자치법」 제161조(공공시설) 등 상위법령에 근거한 합법적이고 정당한 행정재산 관리 권한의 행사임

○ 「충주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」, 「경주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·운영 조례」등 타 지자체의 조례를 비교분석 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적정선에서 사용허가에 대한 규제사항을 규정함

3-2. 이해관계자 협의

○ 입법예고를 통한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추진

3-3. 규제집행의 실효성(집행자원・ 능력)

○ 본 규제는 시설사용신청서 접수 및 허가 조건 부여라는 공공시설 사용허가 행정 절차를 수행하는 것으로, 담당 소관부서(도시정책실 도시개발과)의 현행 행정 인력과 관리체계 내에서 충분히 집행 가능하므로 행정적, 재정적 실효성에 무리가 없음.